

#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 12. 28. 국립국어원 예규 제13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(이하 국어원)에서 수행하는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파견 목표)**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은 국외의 한국어 교원 재교육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합당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전문가’란 파견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국립국어원장이 인정하는 자
2. ‘파견기관’이란 파견지에서 파견에 관한 책임을 맡아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

**제4조 (파견지 선정)** ① 한국어진흥과장은 재외공관을 비롯한 파견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가용 예산과 인력 범위 안에서 파견지를 선정하여 연중 파견한다.

② 파견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곳을 우대한다.

1. 현지의 한국어 교원 수가 많고, 지속적이고 심화된 한국어 교원 교육이 필요한 곳
2. 정책적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
3. 파견 기관의 지원 사항(숙박비, 항공료 등)이 많은 곳
4. 이미 파견한 이력이 있는 지역 중 최근 파견되지 않은 곳
5. 한국어 교원 교육 수요가 새롭게 생기고 조사가 필요한 곳

**제5조(파견 기간)** 파견 기간은 1주일 내외로 하되, 국어원과 파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파견자 선정)** ① 파견지 및 파견 기간이 확정된 후, 파견 기관의 요청과 파견 일정을 고려하여 파견자를 선정한다.

② 파견자는 2명 내외로 하되, 국어원 전문가 1명, 외부 전문가(학계) 1명을 함께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파견자 수나 파견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파견자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으로 교원 재교육과 현지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.

④ 파견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

1. (공통)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
2. (내부) 원내 연구직 파견 현황에 의거하여 파견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자
3. (외부) 전문 교원 연수회 참가자 등 국어원의 전문 강사군(강사 인력 후보군)에 포함된 자
4. (외부) 파견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

**제7조(파견자의 업무)** ① 파견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파견자는 파견 목적에 따라 강의 원고를 성실히 작성하고, 향후 공공 목적의 실현을 위

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원에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. ③ 파견자는 파견지에서 한국어 교원 재교육을 위한 강의,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,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④ 파견자는 파견지의 한국어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지 한국어교육 유관기관 방문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⑤ 국어원 파견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한국어진흥과 국외 한국어 전문가 파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, 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## **부 칙** <2017. 12. 28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